

#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인격성\* \*\*

- 새로운 인권 개념 모색을 위한 전제적 시론 -

양 천 수\*\*\* · 우세나\*\*\*\*

## I. 서론

인격 개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는 법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체계에서도 인격 개념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물론 이러한 인격 개념은 그 개념이 사용되는 영역에 따라 각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은 중립적이고 기능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심리학 영역에서는 성격이나 캐릭터의 의미로, 도덕 영역에서는 도덕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인격 개념이 각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핵심적인 측면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격 개념은 바로 자연적 인간, 즉 사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인격 개념은 인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인간이 아닌 존재, 예를 들어 동물은 당연히 인격체로 지칭되지 않았다.<sup>1)</sup>

\* 투고일자 : 2019.6.5. 심사일자 : 2019.6.19. 게재확정일자 : 2019.6.26.

\*\* 이 글은 공동필자인 양천수 교수가 201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자문한 내용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박사 · 주저자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 교신저자

1) 인격 개념에 관해서는 우선 Martin Brassler, *Person: Philosophische Texte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Ditzingen, 1999); Clemens Breuer, *Person von Anfang an? Der Mensch aus der Retorte und die Frage nach dem Beginn des menschlichen Lebens*, 2. Auflage (Paderborn/Wien/München/Zürich, 2003); Roland Harweg, "Ein Mensch, eine Person und jemand", in: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27 (1971), 101-112쪽; Klaus Robra, *Und weil der Mensch Person ist ... Person-Begriff und Personalismus im Zeitalter der (Welt-)*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연구가 진척되고, ‘알파고’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먼 미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도 인격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예를 들어,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힐겐도르프(E. Hilgendorf)는 형법상 행위, 책임, 인격 등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sup>3)</sup> 이러한 주장은 최근 우리 법학에서도 유력하게 주장된다.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도 인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sup>4)</sup> 요컨대, 기존의 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에 도전하는 새로운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을 검토한다. 첫째, 법체계에서 말하는 인격이란 무엇인가? 둘째, 인격 개념은 법체계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셋째, 인격 개념은 그 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넷째,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인격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만약 인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다섯째,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문제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Krisen* (Essen, 2003); Roland Kipke, *Mensch und Person: Der Begriff der Person in der Bioethik und die Frage nach dem Lebensrecht aller Menschen* (Berlin, 2001); Robert Spaemann, *Personen: Versuche über den Unterschied zwischen ‘etwas’ und ‘jemand’*, 3. Auflage (Stuttgart, 2006); Hans-Dieter Spengler/Benedikt Forschner/Michael Mirschberger (Hrsg.), *Die Idee der Person als römisches Erbe?* (Erlangen, 2016); Dieter Teichert, *Personen und Identitäten* (Berlin, 1999) 등 참고.

- 2) 이에 관해서는 우선 S. Beck, “Über Sinn und Unsinn von Statusfragen - zu Vor- und Nachteilen der Einführung einer elektronischen Person”, in: E. Hilgendorf/J.-Ph. Günther (Hrsg.), *Robotik und Gesetzgebung* (Baden-Baden, 2013), S. 239 ff. 참고; 인공지능 로봇의 특성에 관해서는 김건우, “로봇법학이란 무엇인가?”, *비교법연구* 제17권 제3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7, 89면 아래 참고.
- 3) E. Hilgendorf, “Können Roboter schuldhaft handeln?”, in: S. Beck (Hrsg.), *Jenseits von Mensch und Maschine. Ethische und rechtliche Fragen zum Umgang mit Robotern, Künstlicher Intelligenz und Cyborgs* (Baden-Baden, 2012), S. 119 ff. 참고.
- 4)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7, 45-76면 참고.

## II.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

### 1. 인격의 의의와 특성

#### (1) 인격의 의의

인격이란 무엇인가?<sup>5)</sup> 이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지만 일단 간략하게 정의하면, 인격이란 법체계 안에서 특정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sup>6)</sup> 그러면 법체계 안에서 특정한 주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법체계가 설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닐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바꿔 말해,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지점 또는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적 통일체를 뜻한다.<sup>7)</sup>

#### (2) 인간과 인격 분리

이러한 인격 개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인격’(person; Person)과 ‘인간’(human; Mensch)은 개념적으로 서로 분리된다는 것이다.<sup>8)</sup>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인간과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대법에 토대를 둔 현행 법체계는 ‘인간중심적 사고’에 바탕을 두어 전체 법질서를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초에 자연적 인간만이 인격성을 취득한다. 그러면서도 현행 법체계는 자연적 인간, 즉 생물학적 인간 그 자체를 법의 중심 개념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법체계는 ‘인간’ 개념이 아닌 ‘인격’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법질서 및 법적 관계를 규율한다. 이는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이자 법적 사고의 기초를 제공하는 민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민법은 전체 민사법질서를 규율하는 ‘총칙’(Allgemeiner Teil)에서 법적 관계의 핵심적

5)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인격과 관련하여 ‘인격’, ‘인격성’, ‘인격체’ 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 인격이란 영어 ‘person’ 을 번역한 말로서 추상적인 인격 일반을 뜻한다. 이에 대해 인격성이란 이러한 인격의 자격 또는 속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격체란 인격을 보유하는 개별적인 주체를 뜻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M. Heidegger)의 구별을 빌어 말하면, 인격은 ‘존재’(Sein)를, 인격체는 이러한 인격을 보유한 ‘존재자’(Seiendes)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인격과 인격체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다만 인격과 인격성은 서로 구별되기도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혼용하고자 한다.

6)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이 차지하는 의미, 기능, 변화과정을 간략하게 다루는 문헌으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37면 아래 참고.

7) 이를 지적하는 H. Kelsen, *Reine Rechtslehre*, Studienausgabe der 1. Auflage 1934, Herausgegeben von Matthias Jestaedt (Tübingen, 2008), S. 63-64 참고.

8) H. Kelsen, *Ibid*, S. 64-66.

요소가 되는 ‘권리주체’와 ‘객체’ 및 ‘법률행위’를 규율한다. 여기서 민법은 인간이 아닌 인격을 권리주체로 설정한다. 가령 독일 민법의 판택텐 체계를 수용한 우리 민법은 권리주체로서 ‘人’을 규정한다. 이때 말하는 ‘인’은 독일 민법이 규정하는 ‘Person’을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점이 시사하는 것처럼, 독일 민법은 생물학적 인간을 뜻하는 ‘Mensch’ 대신에 ‘인’ 또는 ‘인격’을 뜻하는 ‘Person’을 권리주체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sup>9)</sup> 이는 법적 주체 역시 인간이 아닌 인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sup>10)</sup>

### (3) 자율적·이성적 인간으로서 인격

이처럼 근대 이후에 등장한 법체계에서는 인간과 인격이 구분되면서 인간 대신 인격이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 개념이 자연적 인간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인격은 인간에 토대를 둔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법에서 전제로 하는 인격은 현실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인간에 가깝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이란 감정과 욕망에 얽매이는 현실의 인간이 아니라, 실천이성과 자율성을 지닌 합리적 인간을 뜻한다. 이는 근대 민법학의 초석을 놓은 19세기 독일의 로마법학자 사비니(F.C.v. Savigny)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sup>11)</sup> 한편으로는 역사법학을 창시하여 법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칸트주의자로서 칸트의 철학을 수용해 민법학의 전체 체계를 설계한 사비니는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 인격 역시 칸트 철학의 시각에서 설계한다.<sup>12)</sup> 이에 따라 인격은 실천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스스로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설정된다.

이러한 인격 개념은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첫째, 민법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구분한다. 권리능력은 생존하는 인간이기에만 하면 인격으로 인정되어 평등하게 부여되는 자격을 뜻한다(민법 제3조).<sup>13)</sup> 이와 달리 행위능력은 실제로 법적 거래에

9) 이에 관해서는 K. Larenz, *Allgemeiner Teil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 (München, 1960) 참고.

10)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 개념이 법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적 인간을 직접 법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법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인권법’ (human rights law)을 들 수 있다. 인권법은 인격 대신 자연적·생물학적 인간을 권리주체이자 보호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외에도 헌법학에서는 ‘국민의 권리’에 대비되는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 아래 인간 개념이 헌법체계 안으로 포섭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격이 아닌 인간이 직접 법적 주체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법체계에서 중심적인 지위는 인격 개념이 차지한다.

11) 이에 관해서는 임미원, “<인격성>의 개념사적 고찰”,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5, 171면 아래 참고.

12) 사비니의 법학에 관해서는 양천수, “개념법학: 형성, 철학적·정치적 기초, 영향”, 법철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7, 233-258면; 남기윤, “사비니의 법사고와 법이론: 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 방법론 연구(8-1)”, 저스티스 제119호, 한국법학원, 2010, 5-51면 등 참고.

13) 민법 제3조는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성년에게만 행위능력을 인정한다(민법 제4조 및 제5조). 이는 미성년자는 아직 실천이성이 완성되지 않아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를 통해 민법에서 전제로 하는 인격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민법은 책임원리로서 ‘과책주의’(Verschuldensprinzip)를 수용한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과책주의에 따르면, 행위자가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이때 고의나 과실은 행위자가 자율적인 존재로서 적법한 행위, 즉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행위자는 자율적인 존재로서 우리 법체계가 설정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도 우리 민법이 인격을 자율적인 이성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이 수행하는 기능

### (1) 주체보호 기능

먼저 인격은 인격으로 승인된 주체를 법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물권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인간처럼 동물에게도 권리주체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를 통해 동물을 인간처럼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특정한 주체가 인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가 권리주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그 주체가 권리에 힘입어 더욱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2) 책임귀속 기능

특정한 주체가 인격체로서 법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법적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의무를 들 수 있다. 법적 주체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의무로서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특정한 주체가 인격체로서 민법상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14) 이에 관해서는 우선 김중길, “전 인권적 관점에서 본 동물권”, 인권이론과 실천 제19호,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2016, 71-93면 참고.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 상대방은 해당 인격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특정한 주체가 인격으로서 법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책임귀속주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인격은 책임귀속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 (3) 인격의 상대방 보호 기능

이렇게 인격 개념이 책임귀속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바꿔 말해 법적 주체인 인격과 법적 관계를 맺는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정한 주체를 인격체로 승인함으로써 이 주체와 법적 관계를 맺는 상대방이 법으로써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격이 기능하는 것이다. 이는 법인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정한 조직체에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이 조직체와 법적 거래를 하거나 이 조직체로부터 불법행위침해를 받은 상대방을 법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 (4) 법적 관계의 명확화 기능

인격은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특정한 주체나 조직에 대해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주체나 조직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나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5) 법체계의 안정화 기능

이렇게 특정한 주체에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관계가 명확해지면, 이는 법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법체계가 안정화되면 법체계 자체의 복잡성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법체계의 외부에 속하는 환경의 복잡성을 감축하는 데도 기여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인격체인 주체를 보호하는 기능이나 그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능 역시 촉진된다. 이는 다시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법체계 전체의 안정성을 강화되는 선순환이 형성된다.

### III. 인격 개념의 확장

법체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인격 개념은 그 내용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인격 개념은 한편으로는 자연적 인간에 토대를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인격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래 III.에서는 인격 개념이 가변적인 개념이라는 점, 법체계가 발전하면서 그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 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근대 이후에 등장한 법체계는 인간 개념과 인격 개념을 분리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인격에 해당하는 독일어 또는 영어 ‘Person’의 어원이 라틴어 ‘persona’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sup>15)</sup> ‘persona’는 연극에서 사용하는 ‘가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연극배우들이 ‘persona’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다. ‘현상과 본질’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원용하면, 인간이 ‘진짜’인 본질에 해당하고 인격은 가면으로서 ‘가짜’인 현상에 해당할 수 있다.<sup>16)</sup> 이에 따르면, 인간이 더욱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고대 로마법 이래로 법체계 안에서는 인간보다 인격이 더욱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인격이 본질적인 것이고, 인간이 현상적인 것으로 뒤바뀐 것이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여기서 세 가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현실적 인간과 이상적 인격

먼저 근대 이후의 법체계, 특히 민법은 인격 개념을 상당히 ‘이상화’(Idealisierung)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격체는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는 전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인격 개념의 원형은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칸트는 인간은 실천이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자율적으로 도덕적인 정언명령을 준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파악한다.<sup>17)</sup> 그렇지만 여기서

15) 이에 관해서는 홍석영, 인격주의 생명윤리학, 한국학술정보, 2006, 26면 참고.

16) ‘현상과 본질’을 쉽게 소개하는 문헌으로는 조성오, 철학 에세이, 동녘, 2005 참고.

17) 칸트의 도덕철학에 관해서는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2 참고;

주의해야 할 점은 칸트가 실제의 인간 역시 이러한 존재로 파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칸트는 인간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물리적 인간’(homo phaenomenon)과 ‘도덕적 인간’(homo noumenon)이 그것이다. 물리적 인간은 현실적 세계, 즉 존재적 세계에서 염두에 두는 인간이라면, 도덕적 인간은 규범적 세계, 즉 당위적 세계에서 염두에 두는 인간이다. 이 중에서 칸트가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규정한 것은 도덕적 인간이다. 반면 물리적 인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 인간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현실적 욕망과 감정에 구속되는 인간, 다시 말해 감정적인 타율적 존재일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현실세계의 물리적 인간 역시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시키면 물리적 인간 역시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칸트가 강조한 ‘계몽’(Aufklärung)이 바로 이러한 과정에 해당한다. 계몽을 통해 자신의 실천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추게 되면, 물리적 인간 역시 자율적인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칸트에 의할 때도 여성이나 미성년자, 노예적 인간은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들은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나 미성년자, 노예적 인간은 현실적으로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도덕적 인간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율적인 도덕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인격이 될 수도 없다. 이는 바로 여성이나 미성년자, 노예적 인간은 법적 주체의 지위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성이나 미성년자, 노예적 인간을 법적 주체의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인 남성중심적 사회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 현실적 인간과 도덕적 인격 개념을 구분하면서 도덕적 인격 개념을 이상적인 존재로 설정하는 것은 그 당시의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이를 예증하듯,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 이래 오랫동안 여성이나 미성년자, 노예적 인간은 온전한 권리주체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후견과 보호 대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처분가능한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인간과 인격을 개념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들은 법체계에 온전하게 편입될 수 없었다.

---

칸트의 도덕철학 및 법철학을 간명하게 소개하는 문헌으로는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법질서: 특히 칸트의 질서사상을 중심으로”, 법률행정논집 제12집, 고려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74, 103-136면; 심재우, “칸트의 법철학”,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5, 7-26면 등 참고.

18) 칸트의 계몽 개념에 관해서는 김용대, “계몽이란 무엇인가?: 멘델스존과 칸트의 계몽개념”, 독일어문학 제15권 제2호, 한국독일어문학회, 2007, 21-42면 참고.



## (2) 관계존재론

다음으로 ‘관계존재론’(Relationsontologie)을 언급할 수 있다. 관계존재론은 ‘실체존재론’(Substanzontologie)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모든 존재는 실체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존재론을 말한다. 철학의 역사에서 보면, 관계존재론은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은 하이데거(M. Heidegger)라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Sein)와 ‘존재자’(Seiendes)를 구별함으로써 존재는 존재자에 구속되기보다는 세계 속에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sup>19)</sup> 이러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관계존재론의 관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발전시킨 학자로서 독일의 법철학자인 마이호퍼(W. Maihofer)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마이호퍼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별하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법 영역에 수용하여 독자적인 법존재론으로 발전시킨다.<sup>20)</sup> 이에 따라 마이호퍼는 존재를 ‘자기존재’(Selbstsein)와 ‘로서의 존재’(Alssein)로 구분한다. 여기서 ‘자기존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현존재 그 자체를 말한다. 생물학적인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바로 ‘자기존재’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로서의 존재’는 이 세계 안에서, 바꿔 말해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각각의 관계 및 지위에 따라 부여되는 존재를 말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 즉 관계존재가 바로 ‘로서의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로서의 존재’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등장한다. 나의 고유한 실존적 존재인 ‘자기존재’는 한 개라 할 수 있지만, ‘로서의 존재’는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절대 한 개일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존재’인 나는 사회 속에서 아들, 남편, 아버지, 친구, 선생, 제자 등과 같은 다양한 ‘로서의 존재’를 갖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기존재’가 사회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면, ‘로서의 존재’는 사회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부여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존재’를 갖기는 하지만, ‘로서의 존재’는 부여받을 수 없다. 무인도에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계존재론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로서의 존재’이다. 실체존재론과는 달리, 관계존재론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가 형성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것이 ‘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존재방식을 이분화하는 것은 영미 철학에서도 발견된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논의되는 ‘자아론’이 그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9)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전양범 (옮김), 동서문화사, 2016 참고.

20) 이에 관해서는 베르너 마이호퍼, *법과 존재*, 심재우 (역), 삼영사, 1996; 베르너 마이호퍼,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윤재왕 (옮김), 지산, 2003 참고.

논쟁은 주로 정의론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이지만, 정의 개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아란 무엇인지, 자아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역시 논쟁대상에 포섭되었다.<sup>21)</sup> 자유로운 개인을 우선시 하는 자유주의는 자아에 관해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를 주장한다. 무연고적 자아론에 따르면, 자아는 사회적 연고, 바꿔 말해 연줄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자아론은 특히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해명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데, 무연고적 자아론은 개인은 공동체와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자아가 공동체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공동체주의는 ‘연고적 자아’(encumbered self)를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자아는 사회 또는 공동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고 속에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마이호퍼의 관계존재론에 따라 볼 때, 이러한 자아론은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 있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무연고적 자아는 ‘자기존재’에, 공동체주의가 주장하는 연고적 자아는 ‘로서의 존재’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관계존재론은 ‘자기존재’와 ‘로서의 존재’가 양립하는 것으로 파악하지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자아론은 무연고적 자아와 연고적 자아가 병존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관계존재론과 자아론이 동일한 존재론을 주장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여하간 ‘자기존재’와 ‘로서의 존재’를 구분하는 마이호퍼의 관계존재론은 인간과 인격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법체계의 태도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생물학적 인간은 고유한 존재로서 ‘자기존재’에 상응한다. 생물학적 인간은 사회 안이나 밖 어느 곳에서든 존재한다. 이와 달리 법체계에서 법적 관계의 귀속주체가 되는 인격은 ‘로서의 존재’에 상응한다. 인격은 사회 안에서 어떤 법적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사회 안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선생으로서, 운전자로서, 매수인으로서 다양한 법적 관계를 맺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더불어 다양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볼 때, 법체계에서 말하는 인격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법적 관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관계적 존재인 것이다. 다양한 법적 관계에 따라 인격은 다양한 ‘로서의 존재’로서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다.

21)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4, 205-242면 참고.

### (3) 사회적 체계와 인격

전체 사회를 사회적 체계와 환경이라는 구별로 관찰한 현대 체계이론 역시 인간과 인격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체계이론은 인간과 인격은 개념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재적으로도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체계이론을 정초한 독일의 사회학자 루만(N. Luhmann)에 따르면, 사회는 사회적 체계와 환경으로 구성된다.<sup>22)</sup> 환경은 사회적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것, 쉽게 말해 사회적 체계의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동시에 사회 그 자체 역시 독자적인 사회적 체계가 된다. 이러한 체계이론에 따르면, 사회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사회적 체계이다. 사회는 인간이 아닌 사회적 체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체계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체계 밖에 속하는 환경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자연적 인간은 생명체계와 심리체계라는 독자적인 체계가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체계와는 분명 구별되기에 사회적 체계의 환경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체계이론에서 인간이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사회적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사회적 체계 안에 포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간은 인격으로서 사회적 체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체계이론에 따르면, 사회는 그 자체 사회적 체계에 속하는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는 다양한 기능체계로 분화된다. 사회체계가 다양한 부분체계로 내적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 경제, 법, 종교, 학문, 예술, 교육, 의료 등이 사회의 독자적인 기능체계로 분화된다. 이러한 사회의 기능체계들은 각기 독자적인 자기생산적 체계로서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코드에 의해 작동한다.<sup>23)</sup> 비유적으로 말하면, 각 사회의 기능체계들은 각기 다양한 색깔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기능체계에 포섭되는 인격 역시 다양한 모습을 갖는다. 이를테면 정치체계에서 자리 잡은 인격과 경제체계에서 자리 잡은 인격 그리고 법체계에서 자리 잡은 인격의 모습은 모두 달라진다. 이러한 근거에서 생명체계와 심리체계로 구성되는 생물학적 인간은 존재론적으로는 단일한 존재이지만, 소통을 통해 사회적 체계 안에 포섭된 인격은 그 체계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으로 채워진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인간과 인격은 체계이론에서 볼 때 개념적·실재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2) 이에 관해서는 N. Luhmann,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M., 1984); N. Luhmann, *Einführung in die Systemtheorie* (Heidelberg, 2017); 니클라스 루만, 체계이론입문, 윤재왕 (옮김), 새물결, 2014 등 참고.

23) 이를 간명하게 소개하는 발터 리제 쉘퍼,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 사상, 이남복 (역), 백의, 2002 참고.

## 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이처럼 칸트의 인격이론이나 마이호퍼의 관계존재론,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볼 때 인간과 인격은 개념적으로 분리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이론은 인격이 단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지 또는 어떤 사회적 체계에 속하는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다원적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격 개념이 사회적 관계나 체계에 의존하는 다원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인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맥락, 체계, 문화 등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시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격의 외연이나 내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변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 3. 인격 개념의 확장

이렇게 인격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라면, 과연 어떻게 인격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마디로 답하면, 인격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확장현상은 인격 개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자연적 인간 개념 역시 예전보다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개념의 범위는 종전의 인간을 넘어 태아까지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배아에 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배아 역시 인간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sup>24)</sup> 여하간 인간 개념과 더불어 인격 개념은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 (1) 자연적 인격 개념의 확장

먼저 자연적 인간에 바탕을 둔 인격 개념, 달리 말해 ‘자연적 인격’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인격 개념을 수용한 고대 로마의 법체계는 인격 개념에 미성년자나 여성, 노예는 포함하지 않았다. 성인 남자인 로마 시민만이 인격성을 취득하였다. 이는 근대법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다만 최초의 근대

24) 이에 관해서는 위르겐 하버마스,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자유주의적 우생학 비판*, 장은주 (역), 나남출판, 2003 참고.

민법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민법전은 시민을 인격체로 수용하여 신분제를 철폐하고 노예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격 개념을 확장하였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나 여성은 여전히 불완전한 인격체로 남아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20세기 초반까지 비록 성인 여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인격체로 승인되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통용되었던 의용민법은 재산적 처분행위와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아내를 행위무능력자로 취급하였다.<sup>25)</sup> 특히 가족법관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인격체로 취급되었다. 다만 여성주의 운동의 영향 등으로 여성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와서는 여성 역시 남성과 동등한 법적 인격체로 승인되고 있다.<sup>26)</sup>

이뿐만 아니라, 인격 개념은 자연적 인간이 사망한 이후에도 존속한다. 예를 들어, 인격체가 살아생전에 한 유언은 자연적 인간이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민법 제1073조 제1항).<sup>27)</sup> 인격체의 법적 의사가 생물학적 인간이 소멸한 경우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형법은 죽은 사람(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한다(형법 제308조). 명예훼손죄는 인격이 갖고 있는 인격권 또는 명예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뜻하므로,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연적 인간이 사망한 이후에도 인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sup>28)</sup> 이를 독일 공법학은 자연적 인간이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기본권이 효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기본권의 ‘사후효’(Nachwirkung)라고 부른다.<sup>29)</sup> 자연적 인간이 사망으로 소멸하였는데도 여전히 기본권이 효력을 미친다는 것은 기본권의 귀속주체인 인격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자연적 인격 개념은 처음에는 자연적 인간보다 좁게 설정되었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그 범위가 일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인간 개념보다 그 외연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는 법체계에 법인이 도입되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25) 이에 관해서는 양창수,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논의: 처의 행위능력 제한에 관한 1947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11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125-151면 참고.

26) 이러한 변화에 관해서는 윤진수, “헌법이 가족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130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233-270면 참고.

27)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8) 물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사자, 즉 죽은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29) 이에 관해서는 D. Merten/H.-J. Papier (Hrsg.), *Handbuch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und Europa*, Bd. IV (Heidelberg, 2011), S. 139 ff. 참고.

## (2) 법인의 등장

현행 민법은 권리주체가 되는 인격 개념에 ‘자연인’ 이외에 ‘법인’(juristische Person)을 포함시킨다. 법인은 법적 필요에 의해 법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격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법인은 자연적 인간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과 재산으로 구성되는 재단법인으로 유형화된다.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의 귀속주체가 된다(민법 제35조). 이렇게 보면, 법인은 민법의 체계 안에서는 온전한 인격으로 인정된다. 다만 형법학에서는 법인을 형법상 의미 있는 인격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해 논쟁이 전개된다.<sup>30)</sup> 자연적 인격과는 달리, 법인은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고, 독자적인 책임의식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인은 자연인과는 여러 모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존재방식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민법학에서는 ‘법인의 본질’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된다.<sup>31)</sup> 역사적으로 보면,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제설이 대립하였는데 이러한 견해 대립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의 본질에 관해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는 이유는 법인의 존재방식을 ‘실체’(Substanz)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인격의 존재방식을 분리하지 않고,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에 따라 법인의 존재방식을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여전히 견해대립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달리 존재방식을 전통적인 실체 개념과 분리하고, 관계존재론이나 체계이론에 따라 존재방식을 파악하면 법인의 본질을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이론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체계이론은 ‘실체’(Substanz) 개념과 ‘실재’(Realität) 개념을 분리하면서, 자연적 인간처럼 실체를 지니고 있지 않아도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귀속주체가 되면 사회적 존재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존재가 사회 안에서 실재한다고 본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회적 체계’(soziales System)이다. 루만에 따르면, 사회적 체계는 소통으로 구성되고 작동한다. 사회 안에서 진행되는 소통을 통해 사회적 체계가 ‘창발’(emergence)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체계는 자연적 인간처럼 ‘실체’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루만은 이러한 사회적 체계는 사회 안에서 실재할 뿐만 아니라, 자기생산적 체계로서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과 코드에 따라 작동한다고 말한다. 소통의 발화자인 인간이 사회적 체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으로 만들어진

30) 이에 관해서는 김성돈,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저스티스 제168호, 한국법학원, 2018, 278-330면 참고.

3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89, 213-218면; 이흥민, “법인의 본질”, 법과 정책 제22집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6, 263-297면 등 참고.

사회적 체계가 오히려 인간 또는 인격을 규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이론은 법인 역시 사회적 체계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체계이론에 따르면, 상호작용 및 사회와 더불어 법인 혹은 법인으로 대변되는 조직체는 대표적인 사회적 체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적 체계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록 자연적 인간처럼 실체는 아니지만 사회 안에서 실재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법인의 본질에 관해서는 법인의제설보다 법인실제설이 타당하다.

이처럼 법인이 법체계가 인정하는 인격 개념에 포섭되어 제도화되면서 인격은 인간보다 더욱 확장된다. 인격 개념이 '탈인간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공적인 가공물이라 할 수 있는 법인이 인격성을 취득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 현행 법체계가 완전히 인간중심적 사고와 결별하여 탈인간중심적 사고로 나아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법인은 여전히 자연적 인격을 통지자(송신자) 또는 이해자(수신자)로 하는 소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적 인간이 모두 사라지면 소통이 사라지기에 법인 역시 존재할 수 없다. 그 점에서 법인은 여전히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있다.

### (3) 동물권 논의

동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시 말해 동물을 권리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에서도 인격 개념의 확장현상을 읽어낼 수 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동물에게 권리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격 개념은 인간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고, 인격성과 권리주체성을 각각 별개로 파악한다면, 동물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 법체계는 인격성과 권리주체성을 연결하여 사고하고 있으므로, 동물에게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물을 독자적인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동물권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인격 및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인격은 더 이상 인간중심적 개념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인격은 자연적 인간과 결별하여 탈인간중심적 존재 개념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한정해 본다면, 현행 법체계 및 판례는 동물을 인격으로 승인하지는 않고 있다. 동물은 권리주체성도 소송의 당사자능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sup>32)</sup> 그 점에서 인격 개념은 여전히 인간중심적 사고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32) 이 문제를 다루는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 2015 참고.

## IV.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인격 인정 문제

### 1. 논의 필요성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격 개념은 애초에 자연적 인간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그 외연을 확장하여 이제는 자연적 인간에 대한 연결고리를 희석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인격 개념은 새로운 문제와 마주한다. 바로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인격, 특히 법적 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는 인공지능 로봇, 가령 자율주행자동차나 인간형 로봇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고를 낸 경우 이들에게 독자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논의되면서 등장하였다. 특히 지난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역사적인 바둑대국이 진행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법학영역 전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동물권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다시 인공지능 로봇을 법적 인격으로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법적 인격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인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 (1) 도덕적 인격과 법적 인격

어떤 경우에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구별해야 할 개념이 있다. ‘도덕적 인격’과 ‘법적 인격’이 그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인격 개념은 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인격 개념이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인격 개념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영역으로 도덕 영역을 들 수 있다. 도덕 영역에서 인격 개념은 도덕 및 윤리적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도덕적 인격과 법적 인격은 모두 규범영역과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지만 도덕과 법이 한편으로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서로 구분되는 것처럼, 도덕적 인격과 법적 인격은 분명 차이점을 갖고 있다.<sup>33)</sup>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먼저 도덕적 인격 개념에서는 주로 도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반면에 법적 인격 개념에서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도덕적 인격에서는 의무주체성이 전면에 등장한다면, 법적 인격에서는 권리주체성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도덕적 인격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존재가 도덕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주로 논의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주체가 도덕적 의무를 보유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간적 외모를 지니고 있는지, 도덕감정을 갖는지, 쾌고감수능력이나 삶의 주체성을 갖는지 문제가 된다. 반면 법적 인격에서는 법인이 시사하듯이 인간적 외모를 지니고 있는지, 도덕 감정을 갖는지, 쾌고감수능력을 갖는지, 삶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이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가 된다. 이 점에서 도덕적 인격과 법적 인격은 차이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 중에서 법적 인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인격 개념의 기준에 관한 기존 논의

법적 인격 개념의 기준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그 동안 인격 개념의 기준에 관해 어떤 논의가 전개되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인격 개념의 기준에 관해서는 그 동안 도덕철학에서 주로 동물권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sup>34)</sup> 이러한 연유에서 법적 인격과 도덕적 인격을 모두 포괄하는 인격 개념의 기준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인격 개념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sup>35)</sup>

첫째, 외양이 인격 부여의 기준이 된다. 자연적 인간과 같은 외양을 갖고 있는 경우 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외양을 갖춘 안드로이드는 인격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영화 “엑스 마키나”(Ex Machina)에 나오는 여성 안드로이드가 여기에 속한다. 이와 달리 동물은 인격체로 승인될 수 없다. 그러나 외양 기준은 법체계에서 인정하는 법인의 법적 인격성을 설명할 수 없다. “알파고”와 같이 인간의 외양을 갖추지 않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도 인격성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이에 따르면, 특정한 주체가 지적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격체로 승인될 수 있다. 이는 애초에 인간이 인격을 부여받는 이유는 인간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33) 법과 도덕의 구분에 관해서는 H. Kelsen, a.a.O., S. 25 ff.

34) 이를 보여주는 목광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기준 논의 고찰”, 윤리학 제5권 제2집, 한국윤리학회, 2016 참고.

35) 이에 관해서는 목광수,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 인정에 근거한 모델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90집, 새한철학회, 2017, 192면 아래 참고.

주목한다. 따라서 만약 인간처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이러한 주체에게도 인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하면, 이때 말하는 지적능력이 어느 정도의 지적능력을 뜻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축적된 연구성과에 따르면, 동물 역시 일정 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경우에도 지적능력이 균일하지 않고,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도 인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준은 한계가 있다.

셋째, 쾌고감수능력, 즉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인격 부여의 기준이 된다. 이 역시 자연적 인간에 바탕을 둔 기준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특히 동물에게 인격을 부여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처럼 동물 역시 쾌고감수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기준은 인공지능 로봇처럼 기계적 존재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자율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특정한 주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인격체로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실이 기준이야말로 인격을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이 존엄한 이유, 인간이 인격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실천이성에 바탕을 둔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야말로 앞으로도 인격 개념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섯째, 미래감을 가질 수 있는지, 바꿔 말해 삶의 주체성을 느낄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그 자체 막연해서 인격 개념을 판단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여섯째, 특정한 이해관심을 갖는지 여부, 바꿔 말해 이익과 손실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철학적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생존욕구 및 자기보존 욕구를 갖고 있다면 인격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기준을 사용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도 인격을 부여해야 한다.

인격 개념에 관해 지금까지 논의된 기준을 보면, 모두 자연적 인간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점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인격 개념에 관한 기준은 여전히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의 인격 인정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인공지능 로봇에 인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인격 개념에 관한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법적 인격 개념 기준에 관한 세 가지 패러다임

법적 인격 개념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지금까지 전개한 논의를 정리해 보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논의에 따르면, 인격은 자연적 인간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그렇지만 인간과 인격이 개념적으로 구분되면서 인격 개념은 그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인격 개념은 자연적 인간과는 달리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역사와 사회 및 문화에 의존하는 관계적 개념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인격 개념은 각 시대에 적합하게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구성 및 설정되는 구성적·관계적 개념인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을 법적 인격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인격 개념 역시 이에 적합하게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로봇을 법적 인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인공지능 로봇을 법적 인격체로 승인할 수 있도록 인격 개념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만약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을 인격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격 개념 부여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면, 이는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sup>36)</sup>

#### 1) 인간중심적 모델

첫째, 인간중심적 모델을 거론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자연적 인간 개념에 기반을 두어 인격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인격 개념은 이러한 인간중심적 모델에 바탕을 둔 것이다. 도덕 영역에서 논의된 인격 개념 기준, 예컨대 외양이나 지적능력, 쾌고감수능력이나 자율성 모두 인간중심적 모델에 기반을 둔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인간중심적 모델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도덕 영역에서 논의된 인격 기준이 법적 인격 기준을 다루는 논의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외양이나 쾌고감수능력, 미래감 등이 법적 인격 개념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중심적 모델에 따라 법적 인격 개념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인격성을 부여받을 주체가 자연적 인간이어야 한다. 인간이 아닌 존재, 가령 동물이나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중심적 모델에 따르면 인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법인은 인격성이 인정되는데, 사실 이것은 인간중심적 모델에

36)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현대 지능정보사회와 인격성의 확장”,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13면 아래 참고.

따라 인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인간중심적 모델을 벗어난 인격 개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인간은 실천이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여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반드시 자율적인 존재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적인 존재의 잠재성을 갖추기만 하면 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자율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적인 주체로서 법률행위나 소송행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적 인격으로 승인될 수 있는 것이다.

## 2)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

둘째,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을 거론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기존의 인간중심적 모델과는 달리 자연적 인간이 아닌 사회적 체계 역시 법적 인격체로 승인한다는 점에서 ‘탈인간중심적’이다. 그렇지만 이때 말하는 사회적 체계는 자연적 인간에 의해 촉발되는 소통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간중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가령 자연적 인간이 모두 소멸하면 소통 역시 사라지므로 사회적 체계 역시 존속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 모델에서 염두에 두는 인격 자체도 모두 소멸한다. 그 점에서 이 모델은 탈인간중심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

이러한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에서 인격성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체계 안에서 진행되는 소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소통에 참여한다는 것은 소통을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자율적인 존재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존재가 반드시 법인과 같은 사회적 체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체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 즉 자연적 인간 역시 이러한 자율적인 존재에 속한다. 셋째, 해당 존재는 그 존재가 아닌 것과 구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해, 존재의 경계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3)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

셋째,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인격 개념을 자연적 인간 개념에서 완전히 분리한다. 자연적 인간이 아니어도 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어쩌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격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기본 토대에서는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과 동일하다. 다만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이 사회적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완전한 탈인간

중심적 모델은 사회적 체계를 포괄하는 체계에 기반을 둔다.<sup>37)</sup> 이 차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앞서서도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 체계는 자연적 인간을 송수신자로 하는 소통에 의존한다. 따라서 인간이 소멸하면 사회적 체계 역시 사라진다. 반면 체계는 자연적 인간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인공지능 로봇의 소통으로 (사회적 체계가 아닌) 체계가 형성된다면,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은 자연적 인간이 없어도 작동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이 자연적 인간을 인격 개념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연적 인간도, 사회적 체계도 그리고 기계적 체계도 모두 특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인격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은 인격 개념에 관해 가장 포괄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격을 부여한다.<sup>38)</sup> 첫째, 특정한 존재가 소통이 귀속될 수 있는 지점으로, 바꿔 말해 소통이 귀속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첫 번째 요건은 다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으로 구체화된다. 먼저 특정한 존재는 그 경계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주체의 내부와 외부가 구별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다음으로 특정한 존재는 지속가능하게 존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통 주체가 될 수 없다.

둘째, 자율성을 지닌 존재여야 한다. 다만 이때 말하는 자율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sup>39)</sup> 일단 여기에서는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수단을 선택하며, 자신이 선택한 수단으로 획득한 결과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체계이론에 따르면, 소통은 <정보⇒통지⇒이해>로 구성되기에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정보를 통지하거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37) 루만의 체계이론에 따르면, 체계에는 기계, 생명체계, 심리체계, 사회적 체계가 있다. 따라서 체계는 사회적 체계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38)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법인의 인격권 재검토: 법철학의 관점에서”, 법학연구 제58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63-191면 참고.

39) 이에 관해서는 아래 IV.3.(2)도 참고.

### 3.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가능성

#### (1) 세 가지 모델에 따른 판단

그러면 구글 답마인드의 인공지능인 ‘알파고’ 덕분에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세 가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인간중심적 모델,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먼저 인간중심적 모델은 인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주체가 자연적 인간일 것을 요구하므로,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봇은 법적 인격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 역시 자연적 인간에서 시작되는 소통에 의존하는 사회적 체계까지만 법적 인격에 포섭하므로 인공지능 로봇을 법적 인격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인간이 아닌 기계까지 법적 인격에 포섭하는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을 수용해야 한다. 이 모델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도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 로봇은 자신이 아닌 것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명확한 경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로봇은 자율적으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로봇은 법체계와 같은 사회적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 (2) 강한 인공지능 로봇과 약한 인공지능 로봇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법적 인격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을 수용하면 된다. 더불어 특정한 인공지능 로봇이 이 모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면 된다. 이에 관해 한 가지 짚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법적 인격을 취득하려면, 자율적으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 로봇이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란 무엇인지, 과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법적 인격을 획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인간 역시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뇌과학자의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sup>40)</sup>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인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이란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40) 이 문제에 관해서는 프란츠 M. 부케티츠, 자유의지, 그 환상의 진화, 원석영 (옮김), 열음사, 2009 참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인공지능 로봇이 도달한 발전상황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은 얻을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약한 인공지능 로봇, 강한 인공지능 로봇, 초인공지능 로봇이 그것이다.<sup>41)</sup> 여기서 약한 인공지능 로봇은 아직 인간과 동등한 정신적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공지능 로봇을 말하고, 강한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과 동등한 정신적 판단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초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정신적 판단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 로봇을 말한다. 이 가운데서 강한 인공지능 로봇과 초인공지능 로봇에게는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약한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이다. 약한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법적 인격을 부여할 것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약한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과 동등한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면서 왜 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반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직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약한 인공지능 로봇은 여전히 수단 또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 달리 말해 주체와는 구분되는 객체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 (3) 현행 법체계의 인격 기준 분석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가 인격에 관해 어떤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지, 달리 말해 인격 기준에 관해 어떤 모델을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 인격 기준에 관한 모델로서 세 가지, 즉 인간중심적 모델,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럼 현행 법체계가 이 중에서 어떤 모델을 수용하고 있는가? 이는 무엇보다도 민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현행 민법은 인격으로서 두 가지를 규정한다. 자연인과 법인이 그것이다. 자연인이라는 인격은, 개념 그 자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자연적 인간에 바탕을 둔다. 이에 대해 법인은 법적 거래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법적 인격이다. 그런데 체계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체계로서 상호작용, 조직체, 사회를 들 수 있는데, 법인은 이 중에서 조직체에 해당한다. 이에 의하면 민법은 사회적 체계에 속하는 법인을 법적 인격으로 승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현행 법체계가 이미 불완전하지만 탈인간중심적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루만은 법을 독자적인 사회적 체계로 규정하면서 행위가 아닌 소통을 중심으로 하여 법, 더 나아가

41) 이에 관해서는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김명남·장시형 (옮김), 김영사, 2007; 마쓰오 유타카, 인공지능과 딥러닝: 인공지능이 불러올 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 박기원 (옮김), 동아엠엔비, 2016 등 참고.

전체 사회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법체계, 더 나아가 전체 사회체계는 이미 어느 정도 인간중심적 사회와 작별을 고하고 있었던 셈이다.<sup>42)</sup>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현행 법체계가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로봇을 법적 인격으로 승인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격 부여 기준이라는 점에서 보면,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과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현행 법체계, 특히 민법이 인격의 유형으로서 자연인과 법인 이외에 이른바 ‘전자인’(electronic person)을 추가하면서 전자인을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인공지능 로봇이 야기하는 법적 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 만큼 현행 법체계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수준까지 탈인간중심적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 4.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필요성

##### (1) 문제점

이처럼 우리가 인격 기준에 관해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을 수용하면, 강한 인공지능 로봇이나 초인공지능 로봇에게도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약한 인공지능 로봇은 자율적인 법적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여전히 법적 인격체로 승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과연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현행 법체계에서 특정한 주체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특정한 주체에게 권리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권리를 부여하고 보장한다. 둘째, 이를 통해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셋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보호한다. 넷째, 특정한 주체를 원인으로 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주체에게 책임을 귀속시킨다.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주체보호 기능, 책임귀속 기능, 법체계의 안정화 기능이 그것이다.<sup>43)</sup> 이 중에서 법체계의 안정화 기능은 주체보호 기능과 책임귀속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때 충족된다.

42) 정성훈, “인간적 사회와의 작별: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관을 통한 새로운 사회비판의 출발점 모색”, 시대와 철학 제18권 제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7, 81면 아래 참고.

43) 상대방 보호 기능은 책임귀속 기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주체보호 기능 수행 여부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우선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면 당연히 권리주체가 되므로, 인공지능 로봇을 법으로써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면, 인공지능 로봇을 학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이러한 논의는 동물권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동물에게 권리주체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물을 법으로써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면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주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3) 책임귀속 기능 수행 여부

다음으로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면 책임귀속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책임귀속 기능을 법체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임귀속에 해당하는 민사책임귀속과 형사책임귀속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민사책임의 경우

현행 민법에 따르면, 우리가 특정한 법적 인격체에게 민사책임을 귀속시키는 이유는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인격체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피해자는 이러한 인격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이때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현실적으로 관철되려면 인격체에게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존재해야 한다(민법 제394조). 만약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책임재산이 인격체에게 없다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명무실한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과는 달리 재산을 축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로봇은 대개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책임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여 민사책임을 귀속시킬 필요가

44)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지훈, “안드로이드 하녀를 발로 차는 건 잔인한가?”, 권복규 외, 미래 과학이 답하는 8가지 윤리적 질문: 호모 사피엔스씨의 위험한 고민, 메디치, 2015 참고.

있을지 의문이 든다. 차라리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하거나 고용한 자연적 인간에게 사용자 책임이나 소유자 책임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방안이지 않을까?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별도로 인정하는 이유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민법 제755조 및 제756조).

## 2) 형사책임의 경우

다음으로 인공지능 로봇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여기서 우리는 왜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에 관해 형법학에서는 보통 세 가지 대답을 한다. 응보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이 그것이다. 이는 형법학에서는 형벌론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된다.<sup>45)</sup> 응보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형벌로 치러야 한다. 일반예방이론에 따르면, 사전에 범죄를 억제하거나 형법규범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형벌을 부과한다. 특별예방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를 교육하고 재사회화하기 위해 형벌을 부과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을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인공지능 로봇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굳이 번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형사절차를 거쳐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인공지능 로봇을 재프로그래밍하거나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치 폐차를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을 폐기처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공지능 로봇에게 굳이 형사책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는다.<sup>46)</sup>

## 3) 중간결론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하여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그다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형사책임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로봇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번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지 않아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더 간편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적절한 보장방안이 존재한다.

45)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빈프리트 하세머, 범죄와 형벌: 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배종대·윤재왕 (옮김), 나남, 2011 참고.

46) 이를 지적하는 양천수, 앞의 논문, 45-76면 참고.

#### (4) 법체계의 안정화 기능 수행 여부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를 안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가? 만약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지 않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유발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는 법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법적 관계가 불명확해지고 이로 인해 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로봇에게 굳이 법적 인격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면,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체계의 안정성이 저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논증한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여 책임귀속을 인정하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법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전개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을 권리주체로 보아 그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책임귀속 기능이나 법체계의 안정화 기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이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굳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더군다나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기꺼해야 약한 인공지능 로봇만이 구현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약한 인공지능 로봇은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법적 인격을 부여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그럴 만한 상황에 도달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전개한 논증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러한 결론은 인격 개념이 갖고 있는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굳이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인공지능 로봇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책임을 묻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리 법체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찌면 상징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 로봇에게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선불리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 참 고 문 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89.
- 김건우, “로봇법학이란 무엇인가?”, 비교법연구 제17권 제3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7.
- 김성돈,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저스티스 제168호, 한국법학원, 2018.
-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 2015.
- 김용대, “계몽이란 무엇인가?: 멘델스존과 칸트의 계몽개념”, 독일어문학 제15권 제2호, 한국독일어문학회, 2007.
- 김중길, “전 인권적 관점에서 본 동물권”, 인권이론과 실천 제9호,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2016.
- 남기윤, “사비니의 법사고와 법이론: 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 방법론 연구(8-1)”, 저스티스 제119호, 한국법학원, 2010.
- 목광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기존 논의 고찰”, 윤리학 제5권 제2집, 한국윤리학회, 2016.
- 목광수,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 인정에 근거한 모델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90집, 새한철학회, 2017.
-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법질서: 특히 칸트의 질서사상을 중심으로”, 법률행정논집 제12집, 고려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74.
- 심재우, “칸트의 법철학”,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5.
- 양창수,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논의: 처의 행위능력 제한에 관한 1947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11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양천수, “개념법학: 형성, 철학적·정치적 기초, 영향”, 법철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7.
- 양천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4.
- 양천수,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7.
- 윤진수, “헌법이 가족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130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이흥민, “법인의 본질”, 법과 정책 제22집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6.
- 임미원, “<인격성>의 개념사적 고찰”,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5.
- 정성훈, “인간적 사회와의 작별: 니콜라스 루만의 사회관을 통한 새로운 사회비판의 출발점 모색”, 시대와 철학 제18권 제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7.

정지훈, “안드로이드 하녀를 발로 차는 건 잔인한가?”, 권복규 외, 미래 과학이 답하는 8가지 윤리적 질문: 호모 사피엔스씨의 위험한 고민, 메디치, 2015.

조성오, 철학 에세이, 동녘, 2005.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홍석영, 인격주의 생명윤리학, 한국학술정보, 2006.

니클라스 루만, 체계이론입문, 윤재왕 (옮김), 새물결, 2014.

베르너 마이호퍼, 법과 존재, 심재우 (역), 삼영사, 1996.

베르너 마이호퍼,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윤재왕 (옮김), 지산, 2003.

프란츠 M. 부케티츠, 자유의지, 그 환상의 진화, 원석영 (옮김), 열음사, 2009.

발터 리제 쉘퍼,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 사상, 이남복 (역), 백의, 2002.

마쓰오 유타카, 인공지능과 딥러닝: 인공지능이 불러올 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 박기원 (옮김), 동아엠앤비, 2016.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2.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김명남·장시형 (옮김), 김영사, 2007.

위르겐 하버마스,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자유주의적 우생학 비판, 장은주 (역), 나남출판, 2003.

빈프리트 하세머, 범죄와 형벌: 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배종대·윤재왕 (옮김), 나남, 2011.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전양범 (옮김), 동서문화사, 2016.

S. Beck, “Über Sinn und Unsinn von Statusfragen - zu Vor- und Nachteilen der Einführung einer elektronischen Person”, in: E. Hilgendorf/J.-Ph. Günther (Hrsg.), *Robotik und Gesetzgebung* (Baden-Baden, 2013).

Martin Brassler, *Person: Philosophische Texte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Ditzingen, 1999).

Clemens Breuer, *Person von Anfang an? Der Mensch aus der Retorte und die Frage nach dem Beginn des menschlichen Lebens*, 2. Auflage (Paderborn/Wien/München/Zürich, 2003).

Roland Harweg, “Ein Mensch, eine Person und jemand”, in: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27 (1971).

E. Hilgendorf, “Können Roboter schuldhaft handeln?”, in: S. Beck (Hrsg.), *Jenseits von Mensch und Maschine. Ethische und rechtliche Fragen zum Umgang mit Robotern, Künstlicher Intelligenz und Cyborgs* (Baden-Baden, 2012).

H. Kelsen, *Reine Rechtslehre*, Studienausgabe der 1. Auflage 1934, Herausgegeben von Matthias Jestaedt (Tübingen, 2008).

Roland Kipke, *Mensch und Person: Der Begriff der Person in der Bioethik und die Frage nach dem Lebensrecht aller Menschen* (Berlin, 2001).

K. Larenz, *Allgemeiner Teil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 (München, 1960).

N. Luhmann,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M., 1984).

N. Luhmann, *Einführung in die Systemtheorie* (Heidelberg, 2017).

D. Merten/H.-J. Papier (Hrsg.), *Handbuch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und Europa*, Bd. IV (Heidelberg, 2011).

Klaus Robra, *Und weil der Mensch Person ist ... Person-Begriff und Personalismus im Zeitalter der (Welt-)Krisen* (Essen, 2003).

Robert Spaemann, *Personen: Versuche über den Unterschied zwischen 'etwas' und 'jemand'*, 3. Auflage (Stuttgart, 2006).

Hans-Dieter Spengler/Benedikt Forschner/Michael Mirschberger (Hrsg.), *Die Idee der Person als römisches Erbe?* (Erlangen, 2016).

Dieter Teichert, *Personen und Identitäten* (Berlin, 1999).

## &lt;국문초록&gt;

이 글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먼저 인격이란 무엇이고, 이러한 인격이 법체계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II). 이어서 그 동안 인격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검토한다(III). 이에 따르면, 인격 개념은 법체계가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었다.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이 인격 개념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동물권 논의 역시 인격 개념이 자연적 인간을 넘어서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은 법적 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를 판단하려면, 인격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IV). 인격 기준에 관해서는 인간중심적 모델,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인간중심적 모델과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봇은 법적 인격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봇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적 인격을 취득한다. 첫째, 인공지능 로봇은 자신이 아닌 것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로봇은 자율적으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로봇은 법체계와 같은 사회적 체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권리주체로 보아 그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책임귀속 기능이나 법체계의 안정화 기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굳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행 법체계는 이미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을 수용하고 있기에 인공지능 로봇을 법적 인격으로 승인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 만큼 현행 법체계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수준까지 탈인간중심적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 핵심어

인공지능 로봇, 인격, 법적 인격, 관계존재론, 체계이론, 인간중심적 모델, 탈인간중심적 모델



&lt;Abstract&gt;

**Legal Personality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Chun-Soo Yang\* · Se-Na Woo\*\*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s of whether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can be recognized as a legal person and if so, whether it is necessary to do so. First, we examine what the concept of person is and what functions it performs in the legal system (II). Next,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concept of person has been changed over the years (III). According to this, the concept of person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as the legal system developed. In addition to natural persons, corporations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person. The discussion of animal rights also indirectly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person transcends natural human beings. Then, c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hich are one of the issu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cquire legal personality? In order to respond to this ques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the criterion of personality is (IV). On the criterion of personality, we can present a human-centered personality model, an incomplete post-human-centered personality model and a complete post-human-centered personality model. According to the human-centered personality and the incomplete post-human-centered personality model, an artificial intelligent robot can not acquire legal personality. However, according to the complete post-human-centered personality model,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acquires legal personality if it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First,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should be able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non-self. Second,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should be able to judge autonomously. Third,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social systems such as the legal system. Then, at this point, do we need to giv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legal personality? Assigning legal personality to an artificial intelligence

---

\*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 Dr. jur. · main author

\*\* Professor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 Ph.D in Law · corresponding author

robot is helpful in protecting itself by regard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ubject of rights. However, it does not contribute much to the responsibility attribution function or the stabilization function of the legal system.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need to assign legal personality to artificial intelligent robots at present. However, it is not so difficult to approv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s legal persons because the current legal system already accepts the incomplete post-human-centered personality model. As such, the current legal system is capable of dealing with a post-human-centered society to a considerable degree than we already think.

Keywor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person, legal person, relational ontology, systems theory, human-centered personality model, post-human-centered personality model